

(관인생략)

서 을 특 별 시

인사여구

75-7805

1977. 2. 14.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공무원 유사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지침

공무원 보수규정 제9조 제3항및(별표8)에 의한 공무원 유사경력 인정 범위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같이 시달하니 시하여 사기의 언도로 하거

1. 유사경력 인정범위포 (별표)

2. 유사경력의 환산방법

가. 유사경력기간 계산 방법

유사경력은 그 기간을 월단위로 정리계산한다. 다만, 동일한 환산율을 적용 받는 유사경력 기간은 합산하여 계산하고 그 잔여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유사경력 환산방법

제직기간에 통산할 경력기간은 월단위로 계산한다. 즉, 월단위로 정리된 경력기간을 환산율에 따라 계산한후 월단위 이하의 잔여일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의시)



근무처	직종 및 직위	임용일자 (년월일)	면직일자 (년월일)	제직기간		적용 환산율	정리된 경력기간	제직기간 환산율
				일수	일수			
충청북도 공무원	상용직 (속임)	70.2.10	70.3.25	4	15	8할		
	경년 공무원	71.2.15	71.9.10	2	15			
	계 지 부			7			7월	5월
충청북도 공무원	부 장	71.1.1	71.3.15	7	14	7할	7월	4월

3. 유사경력의 통산절차

가. 통산신청: 유사경력을 통산받고자 하는자는 경력증명서(기관장이 발급한 것에 한함)를 원부하역 유사경력 통산신청서(서식별첨)를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경력조회, 확인된 통산에 따른 환율 발령

(1) 유사경력 통산신청서를 접수한 기관장은 동일 유사경력사항의 사실 여부를 조속히 조회, 확인하여야 한다

(2) 조회, 확인이 완료된 유사경력은 그 완료된 날이 속하는 다음 달의 초일자로 그 경력을 통산하여 호봉 발령을 하여야 한다.

(3) 다만, 1977.1.1. 현재 직직중인 자가 1977.3.31.까지 통산신청서를 제출하여 동 경력의 조회, 확인의 동년 4.30까지 완료된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통산에 다른 호봉 발령의 효력은 1977.1.1.자로 소급 인정할 수 있다.

다. 퇴산결재에 관한 기각사항에 관하여는 근속기관 합산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4. 승급 기를 처리에 관한 사항

유사경력은 호봉 확정근 개란에 그 내역을 기입하되, 근속 기관에 통산할 산정경력 연, 월의수를 비교란에 등기한다.

첨부 1. 유사경력 인정범위도 1부.

2. 유사경력 통산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승진처 시산학 전기관.

유사경력통산신청서

경력보유자 소속:

직명:

성명:

근무처	직종 및 직급	임용일자 (년 월 일)	면직일자 (년 월 일)	재직기간		적응 환산율	비고 (근거 법령기타)
				월수	일수		

공무원 보수규정 제 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사경력을 근무기간에 통산하고자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첨부: 재직증명서 통

197 신청인

키 하

(별표)

유사경력 인정 범의표

경 력 구 분	수혜 대상자의 범위 (근속수향대상 공무원에 한함)	인정 대상 기관의 범위	인정 대상 경력의 범위 (1948. 8. 15. 이후의 경력에 한함)
1. 전문연구직 경력 가. 연구직 및 기술직 직별 공무원이 교육 연구기관의 정국 직원으로 동업 업무에 종사한 경 력 (8할)	연구직 및 기술직 공무원의 범위 공무원 임용령 제2조 제7호에 규정된 연구직 및 기술직 별의 공무원	(1) 교육기관 : 교육공무원법 제2 조 제2항에 규정된 교육기관 (2) 연구기관 : 가)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하여 대학에 부설된 연구기관 나) 정부에서 설립자금이나 2년 이상 운영자금을 보조받는 연구기관	정국직원의 신분으로서 현 재의 담당업무와 동일한 업무분야에 상근한 경력
나. 홍보업무 담당자 가. 일간신문사, 통 신, 방송기관의 정국직원으로서 근 무한 경력 (8할)	홍보 담당자의 범위 가. 홍보업무를 주된 기능 으로 하여 설치된 정부 의 각급기관에 근무하 는 공무원 (대통령 령으로 지정된 직제 상의 보조기관 이상의 기관에 한함) 나. 홍보업무를 주된 직 무로 하는 공무원	(1) 신문, 방송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등록된 일간신문사, 통신사 (2) 문화공보부에 등록된 외신 기관 (3) 전파관리법 제4조에 의하 여 허가된 방송국	보도, 편집, 제작, 편성업무를 담당하는 정국직원으로서 상근한 경력
2. 국가기관 및 지방 자치단체 근무경력 경노부 고용원, 임시 직, 촉탁, 잡합등 국가기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기관 에서 상근으로 근무 한 경력 (8할)	근속수향 대상 공무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경노부 고용원, 임시직, 촉탁, 잡합 공원직, 교원, 상용부 유급상 미내원등으로 상근한 경력
3. 준공무원 경력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 (법령에 의 한 것에 한함) 으로 상근한 근무 경력 (7할)	근속수향 대상 공무원	정부투자 기관 등 개별 법령에 의하 여 설립된 법인 및 단체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 또는 공무원에 준하도록 규정된 신분으로 상근한 경력

예규

서 (관을 인 세 특) 별 시

시민 120-185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기관기호 및 수신처번호 사용에 대한 지식



2. 12

1. 시민 120-41(77. 1. 14) 예 의한 서울특별시 예규 제 339호 및 시민 120-84(77. 1. 22)로 시달한 기관기호 및 수신처번호를 사용함에 있어 이를 다루는 공무원들이 그 내용을 숙지하기 못하고 있어 실제 사용하는 과정에서 잘못을 저지르거나 적당히 기재하는 등 공문서 시행에 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으므로 각 기관장은 이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앞으로의 공문서 시행에 추후도 가질없도록 조치할 것인 때 특히 구청과 출장소 및 사업소에서는 문서통제시에 유의하여 이행에 철저를 기할 것. 끝.

문 서 처 리 인	결수	77. 2. 14	결재	
	접수	208	수령자	
	접수처		처리한	년 월 일
	접수인		지시사항	서울특별시

수신처 서관3, 서과 1-71, 서청 1-12, 서출 1-3, 서교, 서산, 문건, 지철, 서노, 서농, 서사 1-69

" 국 인 생 략 "

서 발 특 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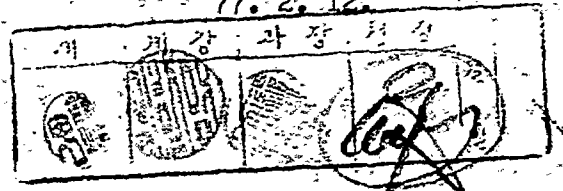
법무 811.11-

75-6379

77. 2. 12.

추신 수신처 참조

제목 소송 수행과 관련된 지시 (소송 지휘)



1. 서울 지방검찰청 소송 811.11 (77.2.4) 및 내무부 법무 811-1943 (71.2.8) 와 관련된 지시임.

2. 당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사건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에 위배되거나 사회의 이목을 끌 사건이 선고 되었을 경우 이는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담당자는 즉시 서울 지방검찰청 (참조 소송사무과장) 에 통보토록 할 것.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소송수행자는 변론 기일 및 선고 기일에 반드시 법정 에 출석할 것이며 대법원 판례에 위배되거나 사회의 이목을 끌 사건이 선고 되었을 경우 즉시 서울 지방검찰청 주임검사에게 그 결과를 보고 할 것.

4. 이 지시는 전직원에게 공람 주치시킬 것이며 지방검찰청 및 주임검사에게 보고한 후 이에 대하여 기획관리관 (실제 법무담당관) 의 협의를 거쳐 시행토록 할 것.

부처지리인

일시	77. 2. 12	성명	
접수번호	307	처리한	년 월 일
전결일자		지시사항	지
분류			

수신처 시찰하 전기관



네주

(관인생략)

서울특별시

인사 810-20 75-7805 1977. 2.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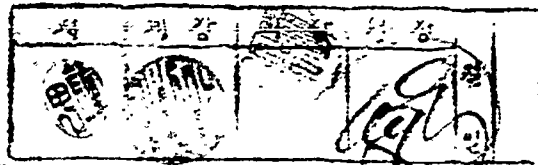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에 대한 질의 (회시)

1. 네무부장관과 별첨과 같이 질의조복이 있었기 이를 통보하
니 업무처리에 참고할 것.

2. 성복 총무 200-187 (77. 1. 2) 질의는 본 회시로 같음하여
"질의나"의 퇴직발령, 초봉승급의 발령은 별개 규정에 의한 인사발
령임으로 별도의 해석을 요하지 아니함.

첨부 질의조복문 1부. 끝.



문 서 처 리 인	정수	77. 2. 14	출제	
	접수		번호	
	전결	203	처리	년 월
	전결		기한	
	분류		지사항	

서울특별시



수신처 서청7-12, 서출 7-3, 서사 1-75, 서코 1, 지철 1, 서농 1

법무담당관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액 대한 질의

○ 서울특별시장 질의 (인사 810-148
1977. 1. 27)

1.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 15조의 규정 운용상 다음 사항을 장의하오
나 조속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

2년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이 1월 1일자로 정년퇴직 발령을 받은
경우 1월분 봉급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3. 의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 15조 제 1항 본문의 규정상 퇴직후 보수의
계산은 발령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퇴직 발령의 경우
보수의 계산시 발령일을 포함할 것인가에 관하여 이견이 있다.
동조 제 3항의 의하면 "퇴직시의 송달이 지연되어 편직일은 종무후
역 실제 근무한 때에는 편직퇴직시를 받은 날까지 일할 계산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 퇴직 발령일은 기적 보수기산일수에 산입하여
일할 수 있으므로, 퇴직발령일을 동조 제 1항 단서 규정중 "일
제로 근무한 일수"로 볼이 별리상 타당할 것으로 시료됨.

○ 내무부장관 응답 (행정 810-1557
1977. 2. 8)

인사 810-148 (77. 1. 27)로 질의한 지방공무원 보수 지급액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2년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이 1월 1일자로 정년퇴직 발령을 받았을
경우 1월분 봉급 전액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 15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해 보수는 실제 근무
일수에 의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동조 단서는 퇴

직하는 공무원에게 실제 근무일수에 불구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기초로 하여 퇴직후에 있어서 생활급의 일부로
서 지급하는 윤리적인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므로 퇴직하는 열의 봉
급은 전액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관인생략)

서 을 특 별 시

인사 200-

75-7805

1977. 2. 10.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훈련성적평정의 대상교육 기관 추가

1. 총무처 예규 제83호 (76.7.31) 와의 관련임.

2. 공무원 승진을 위한 평정규정의 개정(76.9.19)으로 정부전자계산소가 훈련성적평정대상 교육 기관으로 추가됨에 따라 동 기관의 공무원 . . . 교육에 대한 그과과목이 그육훈련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 되었으므로 동 과정 이수자의 훈련성적은 77. 1. 24일부터 평정되도록 조치할 것. 끝.

수신처	77.2.11	행정처	행정처장
보통	198	처리	처장
특별		지시	지시장
선정		사항	
문자			

Handwritten signature and stamp over the table.

서 을 특 별 시

수신처: 직산하 전기관

